



2023

원격검사 지침

한 국 선 급



2023

원격검사 지침

GC-38-K

한 국 선 급

“원격검사 지침”의 적용

1. 이 지침은 별도로 명시하는 것을 제외하고 2023년 1월 1일 이후 검사신청 되는 선박의 원격검사에 적용한다.

적용일자 : 2023년 1월 1일

- | | |
|-------|-------------------------------|
| 제 1 절 | 일반사항
- 전면 개정함. |
| 제 2 절 | 동등성 요건
- 전면 개정함. |
| 제 3 절 | 검사의 범위 및 절차
- 전면 개정함. |
| 제 4 절 | 정보통신기술 (ICT)
- 전면 개정함. |
| 제 5 절 | 증빙자료의 기록 및 검사 보고
- 전면 개정함. |

차 례

제 1 절 일반사항	1
제 2 절 동등성 요건	2
제 3 절 감사의 범위 및 절차	4
제 4 절 정보통신기술 (ICT)	6
제 5 절 증빙자료의 기록 및 검사 보고	8
〈부 록〉	
부록 1 선장의 선언서	11

제 1 절 일반사항

101. 일반사항

1. 선박검사는 다른 방법과 개념을 활용할 수 있다. 이 지침에는 **선급 및 강선규칙 1편 2장 11절**의 원격검사를 수행하기 위한 원칙과 최소 요구사항을 서술하고 있다.
2. 원격검사는 검사원이 승선입회하는 검사와 동등한 효과성이 있게 수행되어야 한다.

102. 적용

1. 본 요구사항은 자항 여부에 관계없이 모든 선박에 적용한다. 다만, 해양구조물에는 이 지침을 준용할 수 있다.
2. 원격검사는 우리 선급이 별도로 정하는 PSC Total Matrix Point(이하 "PSC TM값"이라 한다)을 바탕으로 **301**의 표 1에 따라 수행가능 여부를 결정한다.

103. 용어의 정의

용어의 정의는 여기에 별도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선급 및 강선규칙**에 따른다.

1. **원격검사(Remote Survey)**는 선박 또는 선박의 기기가 선급기술규칙에 따라 적합하게 유지되고 있는지를 검증하는데 있어서 검증의 전부 또는 일부를 검사원의 승선 없이 실시하는 검사를 말한다.
2. **정보통신기술(ICT)**은 원격검사를 수행함에 있어서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를 모두 포함하는 정보를 수집, 저장, 검색, 처리, 분석 및 전송하기 위해 사용되는 기술이다.
3. **라이브 스트리밍(Live Streaming)**이라 함은 비디오 및 오디오를 통해 선박의 상황을 검사원에게 실시간으로 전달하는 것을 말한다.

비고

- (1) **검사원의 승선입회(Attendance on board by a surveyor)**는 검사원이 선박에 승선하여 물리적으로 입회하는 것을 의미한다.
- (2) **원격 선급 활동 (Remote classification activities)** 중 일부 관리업무와 같이 검사가 필요하지 않은 활동은 원격 검사로 간주하지 않는다.
- (3) **관리업무(Administrative task)**는 일부 검사 결정이 이루어지지 않는 작업이다. 예를 들어 증서 또는 기록의 수정에 따른 재발급, 선급이 보유하고 있는 선박 기록의 업데이트 또는 문서 검토가 해당된다.

제 2 절 동등성 요건

201. 일반사항

1. 원격검사와 검사원이 승선입회하는 검사의 동등성에 대한 요구사항은 다음과 같다.
 - (1) 원격검사의 적격성
 - (2) 검사원의 자격
 - (3) 원격검사 계획
 - (4) 원격검사 수행
 - (5) 원격검사 평가
 - (6) 보고
2. 정보통신기술(ICT)을 사용하여 검사원이 원격으로 다음을 수행하는 경우 동등성을 가지며, 원격검사의 결과는 검사원이 승선입회하여 검증한 것과 동등한 수준을 보장한다.
 - (1) 해당 규칙에 따라 필요한 지원 및 기술적 증빙자료를 확보
 - (2) 해당 검사항목 및 관련 시험을 검증

202. 원격검사의 적격성

1. 원격검사의 적격성은 301.에 따라 신청된 검사의 종류와 범위에 따라 결정되며, 기국의 승인 및 지침이 있다면 이에 따른다.
2. 원격검사는 검사원의 승선입회와 같이 동등성 요건에 따라 동일한 수준의 보증을 제공할 때 적격한 것으로 간주된다.
3. 원격검사는 일반적으로 라이브 스트리밍을 통한 육안검사가 가능한 인터넷 연결로 수행되어야 하지만 검사원의 판단에 따라 조합된 원격검사 방법(205. 참조)을 사용할 수도 있다. 단순하거나, 제한된 검증의 경우 검사원은 다른 유형의 정보통신기술(ICT)을 인정할 수 있다.

203. 검사원의 자격과 모니터링

1. 자격

- (1) 원격검사에 참여하는 검사원은 선종 및 검사 종류에 대한 표준 절차에 따라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즉, IMO RO Code(MSC.349(92)), IACS PR 7을 반영한 우리 선급의 교육 관련 절차에 따른다.
- (2) 원격검사에 참여하는 검사원의 자격을 충분히 갖추기 위해, 해당되는 원격검사의 범위 및 방법과 관련하여, 원격검사에 사용되는 정보통신기술을 포함하는 추가 교육이 수행되어야 한다.
- (3) 원격검사 자격에 필요한 추가 교육은 우리 선급의 절차에 따라야 하며 다음을 제공해야 한다.
 - (가) 우리 선급의 원격검사 소프트웨어 운용에 대한 지식 (해당되는 경우)
 - (나) 원격검사와 관련된 기술적, 절차적 측면에 대한 지식
 - (다) 원격검사와 관련된 연결성 측면에 대한 지식

2. 모니터링

- (1) 원격검사를 수행하는 검사원의 자격에 대한 모니터링은 IACS PR 6을 반영한 우리 선급의 모니터링 관련 절차에 따라 수행되어야 한다.

3. 검사원의 기록

- (1) 원격검사에 대한 검사원의 교육 및 자격에 대한 기록은 우리 선급의 교육 관련 절차에 따라 유지 및 최신화 되어야 한다.

비고

- (1) 검사를 필요로 하지 않는 원격 선급 활동을 수행하는 검사원은 우리 선급의 교육 자격 관련 절차에 따라 교육을 받고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 (2) 선내 담당자 및 선원
 - (가) 선원의 교육 및 자격은 기국의 권한으로, STCW 협약에 의해 규정된다.
 - (나) 선박의 기국은 원격검사에 참여하는 선원의 특정 교육을 위한 조항을 포함하도록 선박의 안전 관리 시스템을 회사에서 최신화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204. 원격검사 계획

1. 해당 요구사항에 따라 원격검사를 수행할 수 있도록 원격검사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계획의 내용은 원격검사 범위에 기초한다.
2. 검사원이 원격검사를 적절하게 계획하고 선원 및 담당자와 의사소통 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규칙에 따라 검사가 수행될 수 있도록 다음을 위한 적절한 수단을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
 - (1) 검사 과정 전과 도중에 원격검사에 참여하는 선원 및 담당자와 적절한 의사소통
 - (2) 사용할 정보통신기술(ICT) 장비 합의
 - (3) 원격검사에 참여하는 선원 및 담당자가 원격검사를 수행하기 위해 선급이 정한 전자 장비 및/또는 소프트웨어에 충분히 숙련되었는지 확인
 - (4) 원격검사에 참여하는 선원 및 담당자의 신원, 직급 관련 필요한 정보 획득
 - (5) 수행할 검사항목을 포함하여 전반적인 검사 사항을 선원 및 담당자에게 제공
 - (6) 원격검사 중, 수집할 증빙자료에 따라 필요한 추가 조치 전달
3. 원격검사를 계획하는 경우 다음 중 하나 이상의 수단을 제공하여야 한다.
 - (1) 라이브 스트리밍 비디오 및 오디오 연결
 - (2) 데이터/전자문서의 교환
 - (3) 기타 우리 선급이 인정하는 수단
4. 선박소유자는 검사의 안전한 수행을 위한 시설을 제공해야 한다.

205. 원격검사 수행

1. 검사원이 해당 규칙에 따라 원격검사를 적절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다음의 증빙자료가 검사원에게 제공되어야 한다.
 - (1) 검사 항목 및/또는 항목 그룹 및/또는 지원 문서의 검토 및 평가
 - (2) 해당 테스트 및/또는 서비스 확인 및 평가
2. 검사원에게 제공된 증빙자료는 해당 요구사항에 따라 신청된 검사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완전성 및 정확성과 관련하여 검사원에게 기술적 평가 및 최종 인정을 받아야 한다.
3. 원격검사를 수행하기 위해 '부록 1 선장의 선언서'에 추가하여, 다음 중 하나 이상의 증빙자료가 검사원에게 제공되어야 한다.
 - (1) 라이브 스트리밍 비디오 및 오디오
 - (2) 선박소유자 대리인이 제공한 녹화 영상
 - (3) 선박소유자 대리인이 제공한 사진
 - (4) 우리 선급이 인정하는 기타 자료 및/또는 증빙 서류

206. 원격검사 평가

1. 검사원은 원격검사를 완료하기 전에 수집된 모든 증빙자료를 평가하고 이를 인정해야 한다.
2. 원격검사에 사용되는 수단은 관련 검사 항목을 만족스럽게 완료하기 위해, 검사원의 전문적 판단에 따라 검사될 필요 증빙자료를 검사원이 수집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3. 검사원의 전문적 판단에 따라 원격검사가 검사원이 승선한 검사와 같은 수준의 보증을 제공할 수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 검사원은 해당 검사 항목을 인정하지 않을 수 있다.
4. 검사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추가의 승선입회검사가 요구될 수 있다.

제 3 절 감사의 범위 및 절차

원격감사는 감사원의 승선입회와 동일한 수준을 보증할 수 있는 경우에만 적용한다.

301. 감사 범위

1. 원격감사는 표 1에 나열된 감사에 대해 감사원의 승선입회하는 감사의 대체 방법으로 제안될 수 있다.
2. 원격감사는 기국의 승인이 필요하며, 기국의 추가 요구사항이 있다면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3. 원격감사가 감사원이 만족할 정도로 수행되지 않거나 우리 선급에서 요구하는 경우, 감사원은 해당 감사항목을 인정하기 위하여 감사원의 승선입회를 통해 원격감사 결과를 확인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표 1 원격감사 가능 항목

번호	원격감사 항목	라이브 스트리밍 요구	PSC TM값(A)에 따른 감사 가능 여부		
			$A < 80$	$80 \leq A \leq 100$	$A > 100$
1	선급 지적사항의 연기, 발행, 해제	X ⁽¹⁾	가능	가능	가능 ⁽³⁾
2	선급 검사 연기	X ⁽¹⁾	가능 ⁽⁴⁾	가능 ⁽⁴⁾	가능 ⁽³⁾
3	CMS 또는 PMS 항목	X ⁽¹⁾	가능	가능	가능 ⁽³⁾
4	선명 변경 임시검사	X ⁽¹⁾	가능	가능	가능 ⁽³⁾
5	앵커 유실에 대한 임시검사	X ⁽¹⁾	가능	가능	가능 ⁽³⁾
6	경미한 기관 또는 장비 손상에 대한 임시검사	X ⁽¹⁾	가능	가능	가능 ⁽³⁾
7	경미한 선체 손상에 대한 임시검사	X ⁽¹⁾	가능	가능	가능 ⁽³⁾
8	지적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경미한 결함/손상에 대한 임시검사	X ⁽¹⁾	가능	가능	가능 ⁽³⁾
9	수중 검사	X	가능	가능 ⁽⁵⁾	불가능 ⁽⁶⁾
10	일부 선급 정기적 검사를 수행하고 남아있는 항목의 완료를 위한 검사를 포함한 정기적 감사의 일부 항목 (등록 검사 또는 정기 감사의 추가 검사 항목 제외)	X ⁽¹⁾⁽²⁾	가능 ⁽³⁾	가능 ⁽³⁾	불가능
11	비자항/무인 바지/폰톤의 선체 구획 검사가 없는 경우 연차 검사	X	가능 ⁽³⁾	가능 ⁽³⁾	가능 ⁽³⁾
12	장비의 경미한 개조/설치/업그레이드	X ⁽¹⁾	가능	가능	가능 ⁽³⁾
13	문서 또는 자료 기반의 등록/정기적/정기/임시 검증 및 검사		가능	가능	가능

비고

1. 우리 선급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감사 항목에 따라 표에 X로 표시되지 않은 감사에 대해서도 라이브 스트리밍을 요구할 수 있다.
2. 표의 6, 7, 8 및 12항에서 "경미한"은 201.의 동등성 요건에 따라 원격으로 검사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3. 표의 (1)~(6)은 다음에 따른다.
 - (1) 우리 선급이 인정하는 경우 경미한 검사 항목이거나, 한가지 이상의 방법(205. 3 참고)을 통해서 원격감사를 수행하는 경우 라이브 스트리밍을 생략할 수 있다.
 - (2) 표의 13항과 같이 순수한 문서검증을 의미한다.
 - (3) 원격감사 완료 후 승선입회 가능한 차기 기항지에서 입회검사 시행
(단, 수중감사는 승선입회시 내부 시체스트, 해수 흡입 밸브 및 콧 등 육안 확인 가능 부위에 대해 검사)
 - (4) 정기적 감사의 연기의 경우, (3)의 검사를 시행
 - (5) 입거검사를 대신하는 수중검사 시, (3)의 검사를 시행
 - (6) 우리 선급이 특별히 인정하는 경우에는 원격감사가 가능하다.

302. 절차

1. 적격성

적격성은 202.를 참고한다.

2. 디지털 정보의 품질, 완전성 및 정확성

- (1) 디지털 정보의 품질에 대한 최종 평가는 감사원의 판단에 따라 결정되며, 감사원이 수집된 디지털 정보의 내용과 품질에 만족하여야 하고, 완료 여부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 (2) 선박소유자는 제공된 디지털 정보의 완전성과 정확성에 대한 책임이 있다. 선박소유자가 감사원에게 제출한 디지털 정보는 검사 항목의 실제 상황을 반영한 것이어야 한다. 사진 또는 비디오가 촬영된 날짜 및 시간을 감사원이 확인할 수 있도록 하거나 메타데이터(Meta Data)에서 식별할 수 있어야 한다.
- (3) 우리 선급은 감사의 증빙자료로 디지털 정보를 수집 및 저장한다. 수집된 모든 디지털 정보를 저장할 필요는 없으나, 검사 완료 여부를 뒷받침하기 위한 정확한 디지털 정보는 감사를 완료하는 감사원의 결정하에 저장하여야 한다.
- (4) 원격감사는 원격감사를 담당하는 감사원의 감독과 지시에 따라 수행된다. 감사원의 요청과 판단에 따라, 감사를 완료하기 위해 감사원의 승선입회를 요구할 수 있다.

3. 라이브 스트리밍을 사용하지 않는 원격감사에 대한 요구사항

- (1) 라이브 스트리밍을 사용하지 않는 경우 통신 및 디지털 정보 수집은 정보통신기술(ICT) 채널(예: 이메일, 데이터 스트림 및 클라우드)을 통해 수행되어야 하며, 이는 검사 전에 우리 선급의 인정을 받아야 한다.
- (2) 선박소유자 대리인은 검사 시작 시 감사를 신청한 선박과 진행하는 선박이 동일인지 확인해야 한다.

4. 라이브 스트리밍을 사용하는 원격감사에 대한 요구사항

선박소유자는 다음을 확인해야 하며, 다음의 요구사항이 충족되지 않는 경우, 원격감사가 거부될 수 있다. 감사원은 라이브스트리밍을 통한 검사 시작 시 감사를 신청한 선박과 진행하는 선박이 동일인지 확인하여야 한다.

- (1) 선박소유자의 대리인이 승선입회하고 검사 대상 지역에 접근해야 한다.
- (2) 선박소유자의 대리인은 4절의 요구사항에 적합한 양방향 시청각 통신수단을 보유하여야 한다.
- (3) 정보통신기술(ICT) 솔루션은 통신수단으로 사용가능하며, 4절의 요구사항을 만족하여야 한다.

303. 하드웨어 및 정보통신기술(ICT) 솔루션

401.을 참조한다.

304. 연결성의 요구사항

1. 선박소유자의 대리인은 검사 전에 인터넷 연결 테스트가 수행되고, 검사 중에 적절한 연결이 이루어지고 유지되도록 보장해야 한다.
2. 라이브 스트리밍에 의한 원격감사의 경우, 감사원과 승선 중인 선박소유자 대리인 사이에 실시간 스트리밍이 가능한 연결이 필요하다. 라이브 스트리밍 연결(오디오 및 비디오)의 품질은 적절한 통신을 보장하여 감사원이 만족스럽게 원격으로 감사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감사원과의 라이브 스트리밍 연결이 불가능하거나 검사 장소(예: 기관실)에서 지속되지 않는 경우 부분적인 온라인 시퀀스(Online Sequence)(선박소유자가 라이브 스트리밍에 포함되지 않은 항목의 사진과 동영상을 오프라인으로 캡처할 수 있는 경우)를 감사원이 인정할 수 있다.

제 4 절 정보통신기술 (ICT)

401. 일반사항

이 절에서는 우리 선급이 허용하는 선박의 이미지 캡처, 비디오 녹화 및/또는 라이브 스트리밍 비디오 또는 기타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는 정보통신기술(ICT) 사용에 대한 최소 요구사항을 기술한다.

402. 하드웨어

1. 선박소유자는 원격검사에 사용되는 모든 선내 하드웨어 설치에 대하여 위험구역을 포함한 선내 사용 및 위치와 관련된 해당 요구사항을 준수하도록 할 책임이 있다. 정보통신기술(ICT)은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이 구성된다.

- (1) 이미지/데이터/비디오 스트리밍을 수신하는 호스트 컴퓨터 장치 (일반적으로 원격검사에 사용되는 소프트웨어 응용 프로그램과 대응되는 노트북 또는 데스크톱 컴퓨터)
- (2) 비디오/사진/데이터를 캡처할 수 있는 디지털 카메라를 포함한 선상 독립형 장치
- (3) 해당 소프트웨어/기술과 대응되는 선상 스마트 장비
- (4) 소음 환경을 위한 헤드폰 및 마이크와 같은 통신 부속품 (해당되는 경우 및 필요한 경우)

비고 : 스마트 장비는 스마트폰, 태블릿, 컴퓨터, 웨어러블 장치, 스마트 안경, 디지털 카메라 또는 네트워크에 연결될 수 있고 필요한 데이터/이미지를 육상으로 전송할 수 있는 기타 장치일 수 있다.

2. 라이브 스트리밍에 사용되는 통신장비에는 최소한 다음의 기능이 있어야 한다.

- (1) 양방향으로 거의 실시간으로 동일한 이미지/비디오를 동시에 볼 수 있는 기능(즉, 라이브 스트리밍)
- (2) 양방향 직접 음성 통신 기능
- (3) 스크린샷 촬영 기능

3. 라이브 스트리밍을 위해 선내에서 휴대용 장치를 사용할 때 손에 든 장치의 움직임이 비디오 및 이미지의 안정성에 영향을 주어 출력 품질이 저하될 수 있다. 필요한 경우, 적절한 안정성을 제공하기 위해 적합한 흔들림 방지 장치를 사용해야 한다.

비고

- (1) 호스트 컴퓨터 화면은 검사 결과 판정을 내리기에 충분한 이미지 품질을 나타낼 수 있어야 한다.
- (2) 선내 휴대용 장비는 검사 대상 범위와 검사 시간에 적합한 전력 용량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403. 인터넷 연결성 (범위 및 속도)

1. 인터넷 연결성의 요구사항은 304.를 참조한다.

2. 선상의 스마트 장비는 셀룰러, Wi-Fi 또는 위성 연결을 통해 원격검사원에게 이미지/비디오/데이터를 전송할 수 있는 기능이 있어야 한다.

3. 라이브 스트리밍이 적용되는 경우, 인터넷 연결은 검사원이 만족할 수 있도록 원격검사 장소에 직접 컬러 사진/영상 및 음성 통신의 품질(해상도 및 프레임 속도 등)을 보장할 수 있는 충분하고 안정적인 대역폭 용량을 가져야 한다.

404. 소프트웨어와 데이터 보안

1. 원격검사에 사용되는 소프트웨어는 우리 선급이 인정하는 것이어야 한다. 데이터 보안을 보장하는 데 사용되는 소프트웨어의 전반적인 기능과 성능은 사용 전에 아래 요구사항에 따라 평가되어야 한다.

2. 검사원은 일반적으로 선상의 선원 및 담당자에게 지침을 제공하고 관련 정보를 캡처하기 위한 검사 활동을 감독하면서 실시간 영상 통화를 제어해야 한다. 선내 장치는 셀룰러, Wi-Fi 또는 위성 연결을 통해 검사원에게 데이터를 전송할 수 있어야 한다.

3. 원격검사를 수행하는 데 사용되는 소프트웨어는 검사원이 결정을 내리는 과정을 지원하는 다음과 같은 기술과 함께 제공될 수 있다.

- (1) 결함의 인식 및 분류를 위한 인공지능(AI)
- (2) 매개변수를 수집하고 기관 및 장비의 허용/작동상태를 평가하기 위한 사물 인터넷(IoT)
- (3) 데이터 기반 검증 또는 우리 선급이 인정하는 기타 수단

4. 상기 소프트웨어 및 기술은 각각 우리 선급에 의해 평가되고 인정되어야 한다.

5. 소프트웨어/어플리케이션 및 기타 기술의 사용을 고려할 때, 원격검사가 시작되기 전에 우리 선급의 해당 요구사항에 따라 데이터 보호를 고려해야 한다. 원격검사를 수행하는 데 사용되는 소프트웨어/어플리케이션은 본 항에 명시된 기술 요구사항과 대응되어야 한다. 또한, 사용되는 소프트웨어는 다음에 대한 우리 선급의 해당 요구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사이버 보안

(2) 전송된 데이터에 대한 데이터 보호 및 보안

비고 : '우리 선급의 해당 요구사항'은 범용/상용으로 공식 인정된 소프트웨어/어플리케이션 및 기타기술의 사용을 의미한다. 이를 사용하지 않을 시에는 우리 선급의 검토를 받아야 한다.

6. 원격검사에 사용되는 소프트웨어를 우리 선급이 제공하지 않는 경우, 원격검사를 수행하는 데 사용되는 오디오/비디오 소프트웨어 또는 응용 프로그램은 우리 선급과 합의되어야 한다.

7. 선박소유자는 검사를 준비하는 동안 데이터 보안 정책이 회사의 안전 관리 시스템에 따라 이행되는지 확인해야 한다.

비고 : 회사의 안전관리체제(SMS)는 IMO 결의안 MSC.428(98), MSC-FAL.1/Circ.3 및 IACS Rec.166을 고려할 수 있다.

제 5 절 증빙자료의 기록 및 검사 보고

501. 증빙자료의 기록

1. 필요한 증빙자료 (205. 참조)

원격검사는 라이브 스트리밍 영상 및 음성을 우선적으로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301. 표 1 참조).

추가적으로, 또는 대안으로, 검사원이 검사 항목의 상태를 확인할 수 있도록 원격검사 중에 검사원의 요청으로 다음 증빙자료 중 하나 이상을 제출하거나 검증할 수 있다.

- (1) 녹화된 비디오 및 오디오
- (2) 사진
- (3) 선장/기관장의 확인서
- (4) 선박의 로그북
- (5) 선박소유자의 확인서

2. 증빙자료 목록

- (1) 라이브 스트리밍 비디오 및 오디오

정보통신기술을 사용한 라이브 스트리밍 비디오 및 오디오는 4절의 요구사항을 따라야 한다.

- (2) 녹화된 동영상/사진

녹화된 동영상/사진에서는 다음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 (가) 선박소유자 대리인이 실제로 선상에서 촬영했다는 확인
- (나) 촬영 날짜 및 시간
- (다) 증빙자료 수집을 담당하는 선원 및 담당자의 신원

- (3) 선장/기관장의 확인서

선박소유자의 대리인이 제공한 녹화된 비디오/사진은 증빙자료에 표시된 항목의 상태를 확인하는 선장 및/또는 기관장의 서명이 있는 확인서로 보완될 수 있다. 검사원에 의한 원격검사의 최종 평가는 선장/기관장의 확인서를 포함하여, 제공된 모든 증빙자료를 기반으로 한다.

- (4) 선박의 로그북

선장은 다음의 경우에 선박의 로그북에 기재하고 검사원의 요청이 있는 경우 관련 페이지의 사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 (가) 검사원이 원격검사를 시행하는 경우
- (나) 동영상/사진을 촬영하여 선장/기관장의 서명서와 함께 해당하는 추가 서류를 검사원에게 제출하는 경우

- (5) 선박소유자 확인

선박소유자의 대리인 또는 선장은 검사 요청 항목의 상태와 관련하여 제공된 정보 및 증빙자료가 있는 경우 정확성 및 완전성을 확인해야 한다. 이 확인은 검사 신청시 포함될 수 있다.

3. 증빙자료 보관/제출

- (1) 선박소유자의 대리인 또는 선장이 제출한 증빙자료는 다음을 포함한 우리 선급의 관련 절차에 따라 보관되어야 한다.

- (가) 보관/제출할 증빙자료의 종류
- (나) 보관/보관 기간/장소

- (2) 우리 선급은 검사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지 않는 한 라이브 스트리밍 비디오 및 오디오를 증빙자료로 기록 및 저장할 필요가 없다.

4. 기타 증빙서류

- (1) 검사원은 선박소유자 대리인 또는 선장에게 선박의 정비 보고서, 기관 작동에 대한 기록 및 제조자, 전문공급자 또는 서비스 제공자가 발행한 장비 및 서비스 보고서와 같은 추가 문서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 (2) 검사원은 문서가 적절하게 준비되어 선박에 발급되었는지 확인하지만, 우리 선급에 증빙자료로 보관/보유하지 않을 수 있다.

502. 원격검사 보고

1. 원격검사의 보고서는 우리 선급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발행하여야 한다. 검사 보고서에는 다음과 같은 추가 정보도 포함되어야 한다.

- (1) 검사가 원격으로 수행되었다는 표시
- (2) 원격검사 중 사용된 수단에 대한 설명

- (3) 제공된 증빙자료의 표시
- (4) 기국 승인 확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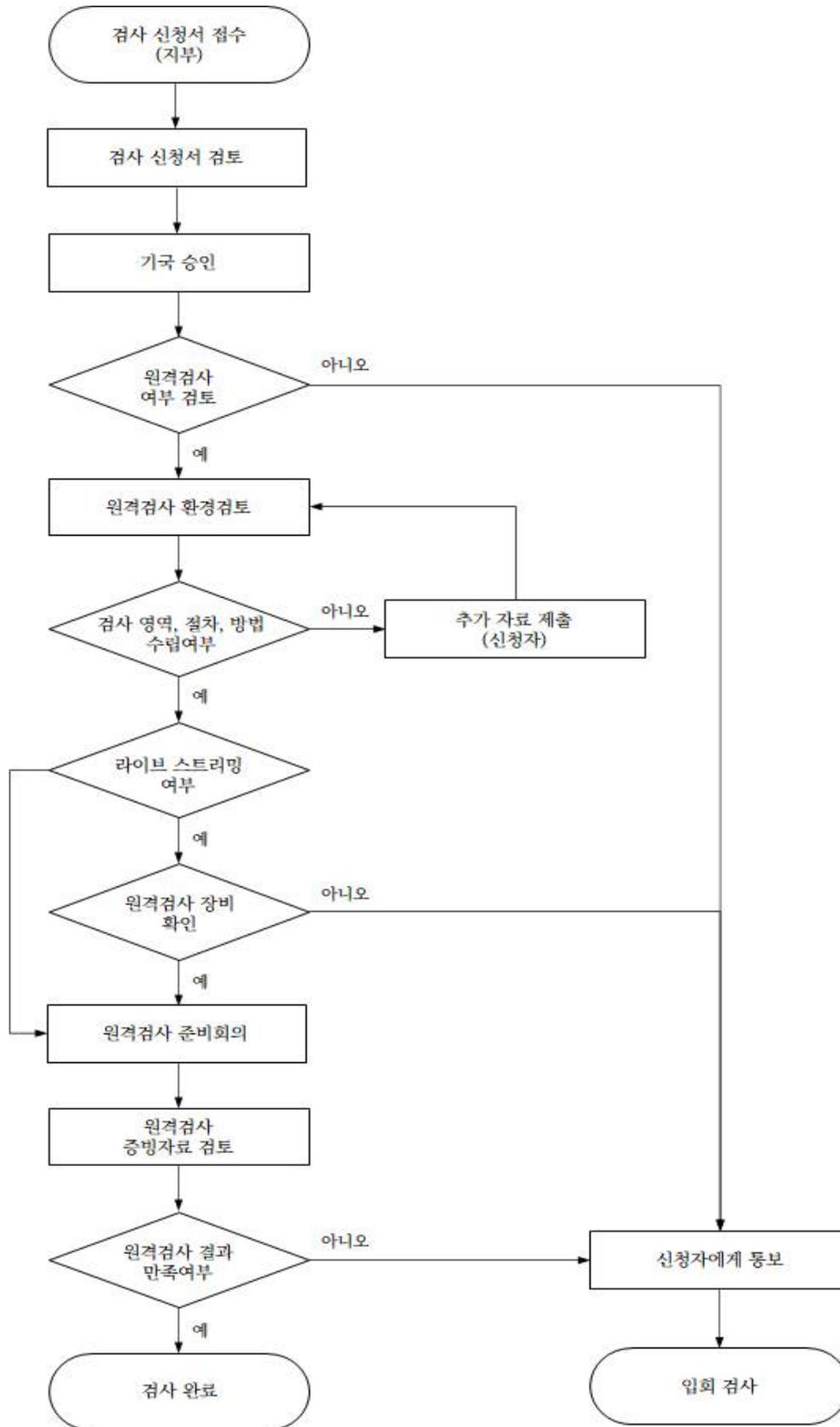


그림 1 원격검사 절차 흐름도

부록 1 선장의 선언서

선장은 2절 205.의 3항에 따라 선언서를 작성, 제출하여야 하며 작성 예는 표 1과 같다.

표 1 선장의 선언서 작성 예

DECLARATION OF MASTER	
Ship name	
IMO No.	
Flag	
Name of the Master	

I, Master of the subject ship, declare that there is no falsehood on the presented data (video, photo, statement, documents, etc.) to Korean Register for the survey at this time, and agree with Terms and Condition of Survey Application of Korean Register.

Day.
Month.
Year.

Master
Signature
(Stamp)

인 쇄 2023년 5월 30일

발 행 2023년 6월 2일

원격검사 지침

발행인 이 형 철

발행처 한 국 선 급

부산광역시 강서구 명지오션시티 9로 36

전화 : 070-8799-7114

FAX : 070-8799-8999

Website : <http://www.krs.co.kr>

신고번호 : 제 2014-000001호 (93. 12. 01)

Copyright© 2023, KR

이 규칙 및 적용지침의 일부 또는 전부를 무단전재 및 재배포
시 법적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